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구도자산운용(주)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 2020.02.05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회사가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그 외 관련법규(이하 “관련법규”라 한다)와 해당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수수료 등”이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 :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2. 성과보수 :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3. 판매보수 :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4. 신탁업자보수 :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자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5.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 집합투자기구의 일반사무관리 업무수행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6. 판매수수료 :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
7. 환매수수료 : 투자자가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4조 (수수료 등의 부과기준)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수수료 등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는 법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만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전문사모집합 투자기구는 법 제86조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성과보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각의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별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다.
2.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는 각각의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별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다.
3.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각각의 전문사모집합 투자기구 별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

제5조 (수수료 부과기준) ① 수수료 수준은 계약의 특성, 규모,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계약 기준으로 경영진이 결정한다.

②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집합투자규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④ 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운용기간중 인상 등의 이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 혹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투자일임수수료 및 투자자문수수료의 경우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투자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수료 지급주기 및 지급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자와 합의하는 투자자문(일임)계약서에 따른다.

제6조 (수수료의 인상)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회사,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설명 의무) 자본시장법 제 47조 1항 및 동시행령 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 권유를 할 경우,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 (공시 및 통보) 회사가 이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한 보수와 수수료는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제23조 및 제30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비용과 판매수수료 현황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 부터 시행한다.